

녹두 수입요령

1. 종자용 녹두

- 세 번, 관세율
 - 0713.31-1000, 607.5%(농산물유통공사 추천시 : 30%), 부가세는 없음
 - **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경매입찰을 하여 세율차이 금액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추천
- 수입요건 준비서류
 - 식물검역 : 중국발행 식물검역증 원본 필요
 - 종자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수입요건확인서 제출(063-919-1000)
-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

2. 식용 녹두

- 세 번, 관세율
 - 0713.31-9000, 607.5%(농산물유통공사 추천시 : 30%), 부가세는 없음
 - **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경매입찰을 하여 세율차이 금액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추천
- 수입요건 준비서류
 - 식물검역 : 중국발행 식물검역증 원본 필요
 - 식품검역 : 식약처에 식품업 영업등록을 필한후 식품검역 신청
 - 포장용기에 식품검역에 필요한 필수 한글표시사항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

3. 녹두분(가루)

- 세 번, 관세율 : 1106.10-0000호, 한.중 4.4%, 부가세 없음
- 식물검역, 식품검역 필요(식용녹두 수입요령과 동일)

4. 기타 녹두(녹두 가공조제품)

- 세율 : 20% 내외, 세 번은 가공종류에 따라 다양함, 부가세납부
- 식용의 경우에는 식약처에 영업등록후 식품검역 필요